# 한강 퇴적토의 식재 토양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br> 조용현 ${ }^{11}$ ．김갑수 ${ }^{11}$ <b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A Preliminary Study on Application of Alluvial Deposit in the Han River for Planting Soil 

Yong－Hyeon Cho ${ }^{1)}$ and Kap－Su Kim ${ }^{1)}$<br>${ }^{1)}$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the alluvial deposit deposited on upper terrace in Han River as a substitute for conventional plant soil．For this purpose，the soi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and germination and growth rate of pansy and marigold for 75 days were investigated．

Soil contamination level of all the samples，except mineral oil，was analysed under the legal contamination level，while some mineral oil was detected in almost samples at $2.0 \sim 32 \mathrm{mg} / \mathrm{kg}$ ．

The measures of the soil texture（sandy loam or loam），organic matter（ $2.5 \sim 5.5 \%$ ），available phosphate（ $22 \sim 98 \mathrm{mg} / \mathrm{kg}$ ），exchangeable cation of $\mathrm{K}(0.5 \sim 1.1 \mathrm{cmol} / \mathrm{kg}$ ）， $\mathrm{Ca}(0.9 \sim 9.6 \mathrm{cmol} / \mathrm{kg}), \mathrm{Mg}$ $(0.1 \sim 0.7 \mathrm{cmol} / \mathrm{kg}), \mathrm{Na}(0.7 \sim 3.1 \mathrm{cmol} / \mathrm{kg}), \mathrm{CEC}(3.1 \sim 24.3 \mathrm{cmol} / \mathrm{kg})$ were identified as not worse than those of conventional planting soil．But the $\mathrm{pH}(5.1 \sim 5.3)$ was detected slightly lower than the range（ $5.5 \sim 6.9$ ）of average domestic field soil．

The germination rate of pansy in alluvial deposit was lower than that of fertile field or paddy field soil，while the growth rate of pansy for 75 days in alluvial deposit was as good as that of the compared fertile soils．But the germination rate and growth rate of marigold in alluvial deposit were much poorer than those of marigold in compared fertile soils．

Consequently，the feasibility of alluvial deposit as a substitute for planting soil was evaluated to be high．


Key words ：alluvial deposit，flooded sediment，recycling，soil contamination，soil conservation

## I．서 론

홍수시에는 한강과 주요 지천에 상당한 양의 퇴적토가 하천 고수부지，低水路，하천시설 동 에 쌓이고 있다．현재 치수 및 고수부지공원 청

소 차원에서 많은 운반비 혹은 폐기물 매립비 용을 들여 매년 이를 준설하여 김포 대립장으 로 운반－사토하고 있다．그러나 홍수시 발생한 퇴적토는 상류 유역의 비옥한 토양의 침식물로 서 일반 토양에 비해 영양분이 풍부하고 유기

물 함량이 높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일부 미홉한 특성을 보완 할 경우 각 종 식재용 토양으로 적합할 것으로 추측됨에도 불구하고，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 정이다．

식물생육지반으로서 토양은 희소한 자원이 며，재생산이 어려운 자원이다．특히 식물 생육 에 적합한 토양을 확보하기는 쉡지 않다．토양 확보는 이를 채춰한 토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도시의 토양은 악화되고 있는데，우선 불투수 포장 면적이 점쯩함으로써 토양환경 자 체의 의미가 퇴색되있다．아울러 포장되지 않 은 토양의 경우에도 사람과 자농자 등의 踏㟲 에 의해 통기성과 투수성이 악화되뗘，유해금 속물질 등으로 오염되어 토양 개량，보존 혹은 재활용과 같은 인위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옥한 홍수 퇴적토에 대한 토양특성의 검증，토양환경이 악화된 도시의 공원 수목 시비용 및 객토용 표도로 활용될 가 능성 검토，그리고 부족한 토양특성 보완방안 과 기타 활뵹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이와 같 은 연구결과가 성공적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예산절감 및 수익사업 추진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환경측면에서도 푸른 도시 가꾸기에 크 게 기여할 것이고，더 나아가서는 지구환경 보 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폐기물로 간 주되어 수거 후 매립되고 있는 퇴적토 중 특히 홍수시 하천 고수부지에 쌓이는 퇴적토를 조겅 식재용 토양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 이다．

## II．재료 및 방법

퇴적토란 토양층 밑의 순수한 기반암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반되어 온 퇴적물을 모재로 발 달한 토양이라 할 수 있으며，퇴적물의 운반작 용 중 流水에 의한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 녑으로 이용될 수 있다．퇴적토는 그 특성상 침 식 발생지 특성을 반영하게 되며，다른 토양과

달리 토양생성작용에 의해 크게 그 성질이 변 화하지 않는다（권혁재，1991）．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하천 流水에 의해 운반 되어 퇴적된 토양에 국한되므로，이는 업밀히 말하면 ‘하천 퇴적토’라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서술의 편의상 ‘퇴적토’라고 언급하기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퇴적토의 발생 량 조사，성상 및 성분 분석，식물생장실험을 실시하고，최종적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퇴적토의 성상은 유역 토지이용 특성，하천경 사 등에 기인하여 하천별로 또는 구간별로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나，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송 파구청 관내의 한강 고수부지，성내천，탄천의 고수부지로 국한하였다．연구 대상은 홍수 때 하천 고수부지에 쌓이는 퇴적토를 중심으로 하 였으며，여기에 추가하여 평상시 정기적인 준 설이 행해지는 하상 퇴적토와 하수도 퇴적토의 성상과 활용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퇴적토의 특성을 확인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분 석이 이루어졌다．

첫째，문헌조사를 통해 퇴적토의 발생량을 파악하였다．

둘째， pH ，유효인산，영양염，CEC 등의 이화 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 카드뮴，구 리，비소，수은，납，크롬，시안，유기인，PCB， 유류，페놀 등의 오염도，폐기뿔공정시험법에 의해 카드뭄，구리，비소，수은，납，크롟，시안， 유기인，TCE，PCE 함량 등 유해성을 분석하였다．

넷째，퇴적토의 자원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 여 성내천 하상 퇴적토，탄천 고수부지 퇴적토， 한강고수부지 퇴적토（골드마리나 선착장 주변） 등에 대하여 식물발아 및 생장 실험을 실시하 였다．

분석에 사용된 토양재료로서는 퇴적토와 혼 합토，대조구 토양（산，밭 토양）을 사용하였고， 식물재료로서는 팬지와 금잔화를 사용하였으 며， 75 일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시료를 채취 한 지점은 송파구를 중심으로 한강 본류 고수 부지（잠실 골드마리나 선착장 부근），탄천 하류

주차장, 성내친 하류 고수부지(몽촌 빗물펌프장 주변), 성내천 중류 하상 퇴적토(야적장 근치와 야적장 내), 그리고 탄천 펌프장과 신천 핌프장 주변의 관거와 맨홀 등이다. 각 지점의 토양시 료는 임의 장소에서 식물뿌리 등 이물질이 포 함되지 않도록 표면을 10 cm 이상 제거한 후 현 장에서 혼합한 후 채취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퇴적토 발생 현황

퇴적토 발생량을 수리•수문학적인 기법을 사 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실상 정확한 추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 외되었다. 퇴적토 발생량은 강우량에 따라 크 게 차이는 있으나, 한강의 저수로에는 최근 10 년간 연평균 약 6 백만 $\mathrm{m}^{\prime}$ 의 토사가 쌓이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한강관리사업소, 1997). 특히 홍 수가 심했던 1995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년 평 균 565 만 $m^{3}$ 의 토사가 퇴적되었으며 1995년도에 는 예년 평균치의 1.6 배에 달하는 9 백만 $m^{\prime}$ 의 토사가 퇴적되었다(표 1 참조). 한강 저수로에 퇴적된 토사는 대체로 모래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준설된 토사는 현재 골재, 수도권매립지 복토재, 수도관 포설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1. 한강 저수로의 토사 퇴적량
(단위 : 천m')

| 년 도 | 퇴적량 | 년도 | 툇저량 |
| :---: | :---: | :---: | :---: |
| 1987 | 5,909 | 1992 | 6,680 |
| 1988 | 5,189 | 1993 | 6,630 |
| 1989 | 4,991 | 1994 | 5,065 |
| 1990 | 6,087 | 1995 | 9,261 |
| 1991 | 5,437 | 1996 | 4,891 |

(자료: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 1997, 『한강 수로조사용역보고서」)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한강고수부 지에 퇴적되는 토사는 홍수 후 대부분 한강으 로 다시 버려지기 때문에 그 양을 정확히 파악 하기 어렵다. 1995년도의 경우 지역에 따라 큰

차이는 있으나 한강고수부지에 최고 1 m 까지 퇴적된 곳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 \sim 50 \mathrm{~cm}$ 가량 퇴적되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1995년 서울시 관내 한강고수부지에 퇴적된 토 사의 양은 부피로써 $257,000 \mathrm{~m}^{3}$, 무게로는 411,000 톤에 달하였다. 이중 $40 \%$ 인 $102,800 \mathrm{~m}^{3}(164,400$ 톤)는 수거되었으나, 초지 등 자연환경지구의 상습 퇴적지에 퇴적된 $60 \%$ 의 퇴적토는 수거 되지 않았다. 한편, 송파구 관내 잠실지구 고수 부지의 면적은 $590,000 \mathrm{~m}^{3}$ 로 1995 년도의 경우 10 cm 정도의 토사가 쌓임으로써 퇴적토 발생량 은 $59,000 \mathrm{~m}^{\prime}$ 로 추정된다.

서울시 주요 지천에 퇴적된 토사의 양에 대 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97년 10월말 현 재 송파구 관내에서는 성내천 하상 퇴적토 $20,441 \mathrm{~m}^{\prime}$ 와 관내 하수도시설 퇴적토 $6,907 \mathrm{~m}^{3}$ 등 $27,348 \mathrm{~m}^{3}$ 가 수거되었다. 이중 $21,058 \mathrm{~m}^{3}$ 는 수도 권매립지에 처분되었으며, $5,220 \mathrm{~m}^{3}$ 는 성내천변 하천부지에 야적되었고, $2,523 \mathrm{~m}$ 는 탈수에 의해 자연 감량되었다. 준설된 퇴적토 처분을 위하 여 운송비( 1 억 9,000 만원)와 태립지 반입비용( 2 억 1000 만원)으로 약 4 억 원이 소요되었다. 특 히, 성내천 하상 준설토의 경우 $12,698 \mathrm{~m}^{3}$ 가 때 립 처분되었으나 비교적 양호한 토사는 무상반 입이 가능하였으므로 약 2 억 6,600 만원의 비용 이 절감되었다(표 2 참조). 탄천 고수부지 주차 장에도 약 10 cm 의 두께로 토사가 퇴적된 바 있 는 데 주차장의 면적 $\left(79,200 \mathrm{~m}^{2}\right)$ 과 퇴적층의 두 께를 고려할 때 퇴적량은 약 $8,000 \mathrm{~m}^{3}$ (약 12,700 톤)

표 2. 준설토 처분현황 (1997년 10월말 현재)

| 구분 |  |  | 처 분 |  |  | 야 적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준설량 <br> (m) | $\begin{array}{\|l\|} \hline \text { 준설비 } \\ \text { (만원) } \end{array}$ | 처분량 <br> (m) | $\begin{aligned} & \text { 운송비 } \\ & \text { (만원) } \end{aligned}$ | $\begin{array}{\|l\|} \hline \text { 매립비 } \\ \text { (만원) } \end{array}$ | 야적량 <br> ( mi ) | $\begin{array}{\|l} \hline \text { 운송비 } \\ \text { (만원) } \end{array}$ |  |
| 하수도 <br> 퇴적토 | 6,907 | 69,674 | 6,907 | 7,024 | 21,058 | 0 | 0 |  |
| 하상 퇴적토 | 20,441 | 5,100 | 12,698 | 12,000 | - | 5,220 | 790 | $\left\lvert\, \begin{aligned} & 2,523 \mathrm{~m} \\ & \text { 자연 } \\ & \text { 감소 } \end{aligned}\right.$ |
| 계 | 27,348 | 74,774 | 19,605 | 19,024 | 21,058 | 5,220 | 790 |  |

주) 탈수에 의해 자언감소 발생 (자료: 송파구청 건설관라과 내부자료)

로 추정된다（퇴적토의 비중은 1995년 한강 본 류 퇴적토의 비중 1.6 이 적용됨）．

서울시 경계 내 한강 및 지천의 홍수 퇴적토 발생량은 강우량 등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한강 저수로에 퇴적된 토사의 양은 홍수량이 많았던 1995년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低水路의 연간 토사 퇴적량은 6 백만 $\mathrm{m}^{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강고수 부지에 퇴적되는 토사의 양은 흥수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년간 평균 퇴적량을 산출하기 가 어려우며 해마다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 에 평균값이 갖는 의미는 크지 않다．지천의 퇴 적토 역시 강우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퇴 적토 발생량은 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 여 홍수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 우에는 토사의 퇴적도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2．퇴적토 톡성

## 1）토 성

토양의 채 분석 결과 얻어진 입경 분포는 그림 1에 입경 누적곡선으로 나타내었으며 입 도분석 결과 점토－실트－모래 구성비는 표 3과 같 다．미국 농무성법으로 분류한 토양입자의 입 도 구분 결과는 탄천주차장 퇴적토를 제외하고 는 모든 퇴적토가 사질양토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이는 우리나라 밭 토양의 $1 / 4$ 이상은 사 질양토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퇴적토가 농업용 또는 식재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탄천주차장 퇴적토는 한강 본류와 합류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점토함량이 낮게 나타났다．탄천의 경우 일반적인 합류지 점과 달리 지천의 하상과 고수부지가 본류보다 높으며 합류부에 보가 설치되어 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탄천 하류 합류부에 인접 한 주차장 부근의 유속이 부분적으로 급격히 빨라지는 현상과 탄천주차장 포장면의 경사 등으로 인하여 낮은 유속에서도 쉅게 세굴되 는 점토질이 한강본류로 유실되었기 때문에

점토질의 함량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추정 된다．


그림 1．퇴적토의 입경 분포

표 3．퇴적토의 점토－실트－모래 구성비

| 시료채취지점 |  | 점토질 <br> $(\%)$ | 실트 <br> $(\%)$ | 모래 <br> $(\%)$ | 분 류 |
| :---: | :---: | :---: | :---: | :---: | :---: |
| （1） | 한강고수부지 | 14.2 | 21.3 | 64.5 | 사양토 |
| （2） | 탄천주차장 | 14.0 | 49.1 | 36.9 | 양 토 |
| （3） | 성내천 하류 | 17.9 | 29.5 | 52.6 | 사양토 |
| （4） | 성내천 중류 | 14.5 | 22.8 | 62.7 | 사양토 |
| （5） | 야 적 장 1 | 15.3 | 25.7 | 59.0 | 사양토 |
|  | 야 적 장 2 | 15.3 | 21.5 | 63.1 | 사양토 |



그림 2．퇴적토의 토성 분포
2) 토양오염도

퇴적토의 오열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퇴 적토를 토양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 로 처분 또는 매립지복토재 등으로 활용할 것 인지에 따라 분석방법이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도를 토양오 염공정시험법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 양환경기준을 우려기준과 대책기준 2 가지로 설 정하고 있다. 우려기준이란 사람의 건강 및 재 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며, 대책기준이란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

꿀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한다. 한강고수부지 퇴적토 및 성내천 퇴적토의 토양 오염도는 표 4에서 보듯 토양오염우려기준도 초과하지 않았다. 다만 표 5 에서와 같이 몽촌 펌프장 및 탄친빗물펌프장의 하수도 퇴적토에 서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구리가 검출되었다.
한편 자연함유량과 대비해 볼 때 우리나라 논의 평균 중금속 함량은 표 6에서 보듯이 카 드뮴이 $0.133 \mathrm{mg} / \mathrm{kg}$ 으로 일본 $(0.4 \mathrm{mg} / \mathrm{kg})$ 의 $1 / 3$, 구 리는 $4.52 \mathrm{mg} / \mathrm{kg}$ 으로 일본( $9.1 \mathrm{mg} / \mathrm{kg}$ )의 $1 / 2$, 아연 은 $3.9 \mathrm{mg} / \mathrm{kg}$ 으로 일본 $(15.2 \mathrm{mg} / \mathrm{kg})$ 의 $1 / 4$ 수준으로

표 4.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한 퇴적토의 토양오염도
(단위 : mg/ks)

| 시료채취지점 |  | 카드뮦 | 납 | 6가크롬 | 비소 | 수은 | 구리 | 시안 | 유기인 | PCB | 유ㄹㅠㅠ | 페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골드마리나 | ND | 13.7 | 1.8 | ND | ND | 2.82 | ND | ND | ND | 2.0 | ND |
| (2) | 탄천주차장1 | ND | 16.3 | 1.75 | ND | ND | 6.05 | ND | ND | ND | 2.6 | ND |
|  | 탄천주차장2 | ND | 2.1 | 1.3 | ND | ND | 8.2 | ND | ND | ND | ND | ND |
| (3) | 성내천하류 | ND | 8.1 | 2.6 | ND | ND | 8.72 | ND | ND | ND | 32 | ND |
| (4) | 성내천중류 | ND | 31.1 | 1.8 | ND | ND | 14.2 | ND | ND | ND | 27 | ND |
| (5) | 야 적 장 1 | ND | 38.7 | 1.7 | ND | ND | 17.7 | ND | ND | ND | 10 | ND |
|  | 야 적 장 2 | ND | 13.5 | 2.1 | ND | ND | 10.7 | ND | ND | ND | 12 | ND |
| 농경지 우려기준 |  | 1.5 | 100 | 4 | 6 | 4 | 50 | 2 | 10 | - | - | 4 |
| 공장지역우려기준 |  | 12 | 400 | 12 | 20 | 16 | 200 | 120 | 30 | 12 | 80 | 20 |

주) 탄천주차장 $1=$ 제방촉 실트질, 탄천주차장 $2=$ 저수로측 모래질

표 5. 송파구 성내천 및 하수도 퇴적토의 토양오염도
(단위: mg/kg)

| 시퐃채췌시점 |  |  | 카드뭄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가크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A | 꽁촌펌프장 |  | 0.365 | 150.5 | 0.210 | 0.860 | 2.068 | 0.310 | 하수노 퇴석토 |
| B |  |  | 0.588 | 1.505 | 0.212 | 1.082 | 0.223 | ND | 성내천 퇴적토 |
| C | 탄천펌프장 BOX |  | 0.170 | 0.205 | 0.389 | 0.141 | 0.325 | ND | 하수도 퇴적토 |
| D | 탄천펌프장 하수관 |  | 0.443 | 61.94 | 0.243 | 0.110 | 32.90 | ND | 하수도 퇴적토 |
| E | 신천펌프장 BOX |  | 0.025 | 0.505 | 1.052 | 0.053 | 0.288 | 0.115 | 하수도 퇴적토 |
| F | 신천펌프장 주변 |  | 0.018 | 0.360 | 0.574 | 0.059 | 0.213 | 0.475 | 하수도 퇴적토 |
| G | 신천퍾프 장 주변 |  | 0.360 | 18.60 | 0.117 | 0.089 | 35.81 | 0.355 | 맨홀 퇴적도 |
| H | 탄천퍾프장 ㅜㅜ변 |  | 0.108 | 0.850 | 0.175 | 0.184 | 0.233 | ND | 땐훌 뵈정토 |
| $\begin{gathered} \text { 기준치 } \\ \text { (낭경지) } \end{gathered}$ |  | 우려 | 1.5 | 50 | 6 | 4 | 100 | 4 |  |
|  |  | 대책 | 4 | 125 | 15 | 10 | 300 | 10 |  |
| 기준치 (공장 - 산업지역) |  | 우려 | 12 | 200 | 20 | 16 | 400 | 12 |  |
|  |  | 대책 | 30 | 500 | 50 | 40 | 1000 | 30 |  |

나타났고, 납의 경우는 $5.73 \mathrm{mg} / \mathrm{kg}$ 으로 일본에 비하여 약 $30 \%$ 낮았다. 이에 비해 송파구 관내 성내천 퇴적토의 납과 비소 오염도는 자연함량 범위 이내이나 일부 하수도 퇴적토에서는 자연 합량을 초과하는 양의 납이 겁출되기도 하였 다. 카드뭄과 구리는 시료채취지점에 따라 자 연함량보다 낮은 지점도 있으며 자연함량을 초 과하는 경우도 있다.

## 3) 유해성

앞에서는 토양오엽이란 관점에서 퇴적토의 오염도를 살펴보았다. 퇴적토가 폐기물인지 여 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가 없다. 따라서 자원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기 물로써 취급받을 가능성도 고려해 두어야 한 다. 폐기물로 매립지에 매립하고자 할 경우 폐 기물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을 검사해야 하는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경우 지정폐기물로 취급되어 단순 매립이 불가능하 며, 매립지 반입수수료도 3 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퇴적토를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촉 정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이내였다.

## 4) 이화학적 특성

국내 경작지 토양과 객토재의 이화학적 성상 은 표 8과 같은데, 한강 및 지천 유역의 퇴적토 의 이화학적인 특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 타내고는 있으나, 표 9-표 11에서 보듯이 논 이나 밭 토양의 평균치와 비교할 경우 일부 항 목을 제외하고 경작토양의 조건을 대체로 만족 시키는 편이다. 한강고수부지 퇴적토는 유-효인 산의 농도가 농겅지 토양 및 객토용 토양의 함 량에 약간 미달하나, 치환성 양이온 농도는 농 경지 수준을 나타내었다. 성내천 퇴적토의 경 우 양이온치환능이 농경지 토양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 5) 퇴적토에서의 식물생장 특성

표토로서의 자원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퇴적토 뿐만 아니라 하상 퇴적토에 대하여

도 발아실험을 시행하였다. 식물발아 및 생장 속도의 비교를 위하여 양질의 밭토양과 부식질 이 풍부한 야산의 표토에 대해 비교 실험하였 다. 실험식물은 씨앗의 발아일수와 발아적온, 생육적온을 고려하여 팬지(발아일수: 10 일, 발 아적온 $15 \sim 20^{\circ} \mathrm{C}$, 생육적온 $5 \sim 25^{\circ} \mathrm{C}$ )와 금잔화 (발아일수 : 5 일, 발아적온 $15 \sim 20^{\circ} \mathrm{C}$, 생육적온 $3 \sim 24^{\circ} \mathrm{C}$ )를 선택하였다.

팬지의 경우 야산의 표토나 밭토양에서는 6 일 이내에 모두가 발아하였으며, 퇴적토에서는 9~11일 사이에 모두 발아하였다. 여기서 발아 율은 씨앗의 총 개수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발 아된 port수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금잔화의 경 우 밭 토양과 야산토양에서는 7~8일 사이에 모두 발아하였으나, 대부분의 퇴적토에서의 9 일간 발아율은 $0 \sim 60 \%$ 였다(표 12 참조). 또한 생장실험결과도 표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 적토에서의 생장속도가 성내천 퇴적토를 제외 하고 야산토나 밭의 토양에서의 생장속도에 비 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통해 퇴 적토가 양질의 야산토나 밭 토양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팬지에 대하여는 발아 및 생육 조 건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잔화에 대 하여는 추가적인 실험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강고수부지 퇴적토를 사용하 여 옥상 조경을 실시한 결과 잔디 및 조경수들 의 생육 상태가 매우 건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강 고수부지 퇴적토는 훌륭한 식재지 반용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1 참조).

## 3. 퇴적토 자원화 방안

한강고수부지 퇴적토에 함유된 유기물은 비교 적 부숙된 상태이기 때문에 넘새를 유발하지 않으나, 하수도 퇴적토의 경우 유기물이 완전 히 부숙되지 않은 상태여서 냄새를 유발하였 다. 이는 주기적인 뒤집기 작업을 통하여 토양 을 호기성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유기물의 분해 를 촉진시키고 악취를 방지할 수 있다(LaGrega, 1994).

퇴적토의 자원화에 있어서 가급적 수거장소

표 6．토양 중 중금속 자연함유량
（단위 ：mg $/ \mathrm{kg}$ ）

|  | 구 분 | 카드뮦 | 구리 | 납 | 아연 | 비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논 | 농업기술연구소（1980년） | 0.128 | 4.18 | 4.79 | 3.95 |  | 407지점 평규 |
|  | 농업과학기술원（1996년） | 0.133 | 4.52 | 4.62 | 3.90 |  | 1，196지점 평균 |
|  | 국립환경연구원（1980년） | 0.135 | 3.99 | 5.73 | 4.36 | 0.56 | 330지점 평균 |
|  | 일 본 | 0.4 | 9.1 | 6.7 | 15.2 | 8.5 |  |
| 밭 | 곡 류 4종 | 0.156 | 3.05 | 4.13 | 8.5 | 0.47 | 215지점 평균 |
|  | 엽 채류 7종 | 0.133 | 3.66 | 2.04 | 15.98 | － | 199지점 평균 |
|  | 과채류 5종 | 0.111 | 3.93 | 1.71 | 16.03 | － | 129지점 평균 |
|  | 근채류 5종 | 0.103 | 2.47 | 1.86 | 14.84 | － | 92지점 평균 |
|  | 과실류 7종 | 0.214 | 3.55 | 1.82 | 24.81 | － | 325지점 평군 |
|  | 서 류 2종 | 0.096 | 2.50 | 3.11 | 8.65 | 0.40 | 162지점 평균 |

（자료 ：김규식，1996，＂중금속 토양오염 복원을 위한 식물기술이용＂，『한국토양환경학회 부산•경남지부 결성 딫 토양환경세미낟）

표 7．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퇴적토의 유해물질 용출실험 결과
（단위 ：mg／L）

| 시료채취지점 |  | 카드뮴 | 납 | 6가크롬 | 비소 | 수은 | 구리 | 시안 | 유기인 | TCE | P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준 치 |  | 0.5 | 3.00 | 1.5 | 1.5 | 0.005 | 3.0 | 1.0 | 1.0 | 0.3 | 0.1 |
| （1） | 골드마리나 | ND | 1.37 | 0.18 | ND | ND | 1.85 | 0.17 | ND | ND | ND |
| （2） | 탄천주차장 1 | ND | 1.73 | 0.175 | ND | ND | 1.96 | ND | ND | ND | ND |
|  | 탄천주차장2 | ND | 0.21 | 0.13 | ND | ND | 1.41 | 0.04 | ND | ND | ND |
| （3） | 성내천하류 | ND | 0.81 | 0.26 | ND | ND | 2.54 | 0.02 | ND | ND | ND |
| （4） | 성내천중류 | ND | 2.11 | 0.18 | ND | ND | 2.7 | 0.02 | ND | ND | ND |
| （5） | 야 적 장 1 | ND | 2.87 | 0.17 | ND | ND | 1.5 | ND | ND | ND | ND |
|  | 야 적 장 2 | ND | 1.35 | 0.21 | ND | ND | 1.7 | ND | ND | ND | ND |

주）탄천주차장 $1=$ 제방측 실트질，탄천주차장 $2=$ 저수로측 모래질

표 8．우리나라 경작지 토양의 이화학적 특징

| 구 분 | pH | $\begin{gathered} \text { 유기물 } \\ \text { \% } \end{gathered}$ | $\begin{gathered} \mathrm{P}_{2} \mathrm{O}_{5} \\ \mathrm{mg} / \mathrm{kg} \end{gathered}$ | 치환성양이 온， $\mathrm{cmol} / \mathrm{kg}$ |  |  | CEC $\mathrm{cmol} / \mathrm{kg}$ | 점토，\％ |
| :---: | :---: | :---: | :---: | :---: | :---: | :---: | :---: | :---: |
|  |  |  |  | K | Ca | Mg |  |  |
| 보 통 답 | 5.53 | 2.5 | 70 | 0.23 | 2.4 | 0.75 |  |  |
| 밭 | 5.7 | 2.0 | 114 | 0.32 | 2.1 | 0.6 | 10.23 |  |
| 객토재（우량） | 5.79 | 0.96 | 31 |  |  |  | 11.67 | 39.9 |
| 객토재（양호） | 6.9 | 1.07 | 48 |  |  |  | 9.63 |  |
| 시설원예지 | 6.4 | 2.5 | 1，032 | 0.97 | 5.0 | 1.0 |  |  |
| 채소재배지 | 6.0 | 2.1 | 305 | 0.63 | 2.4 | 1.25 |  |  |

（자료：조성진 외，1990，「토양학」）

표 9. 퇴적토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

| 시료채취지점 |  | pH | $\begin{gathered} \text { 유기 물 } \\ \% \end{gathered}$ | $\begin{gathered} \mathrm{P}_{2} \mathrm{O}_{5} \\ \mathrm{mg} / \mathrm{kg} \end{gathered}$ | 치환성양이온, $\mathrm{cmol} / \mathrm{kg}$ |  |  |  | CEC $\mathrm{cmol} / \mathrm{kg}$ | $\begin{gathered} \mathrm{EC} \\ \mathrm{dS} / \mathrm{cm}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염기 } \\ \text { 포화도 } \\ \% \end{gathered}$ | 분석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 |  |  | Ca | Mg | Na |  |  |  |  |
| (1) | 골드마리나 |  | 5.70 | 2.84 |  | 0.7 | 6.2 | 0.6 | 2.4 | 16.6 |  |  | 1차 시료* |
| (2) | 탄천주차장1 | 6.84 | 4.71 |  | 1.1 | 4.7 | 0.7 | 3.1 | 10.4 |  |  |  |  |
|  | 탄천주차장2 | 6.76 | 0.52 |  | 0.5 | 0.9 | 0.1 | 0.7 | 3.1 |  |  |  |  |
| (3) | 성내천하류 | 6.83 | 4.16 |  | 0.7 | 9.2 | 0.4 | 2.4 | 22.1 |  |  |  |  |
| (4) | 성내천중류 | 6.75 | 5.47 |  | 0.9 | 8.0 | 0.6 | 2.6 | 20.5 |  |  |  |  |
| (5) | 야 적 장 1 | 7.08 | 3.91 |  | 1.4 | 9.6 | 0.7 | 2.5 | 24.3 |  |  |  |  |
|  | 야 적 장 2 | 6.93 | 3.16 |  | 1.0 | 5.8 | 0.6 | 2.7 | 17.4 |  |  |  |  |
| (6) | 광 나 루 | 5.2 | 2.5 | 22 | 0.34 | 3.2 | 0.6 |  | 11.8 | 0.10 | 70 | 2차 시를 |  |
| (7) | 반 포 | 5.1 | 4.5 | 23 | 0.64 | 4.9 | 0.8 |  | 17.5 | 0.12 | 71 |  |  |
| (8) | 여 의 도 | 5.1 | 4.0 | 64 | 0.56 | 4.35 | 0.75 |  | 15.9 | 0.17 | 69 |  |  |
| (9) | 탄천주차장3 | 5.3 | 4.5 | 98 | 1.01 | 6.15 | 0.8 |  | 17.1 | 0.31 | 90 |  |  |

주) 탄천주차장 $1=$ 제방측 실트질 시료, 탄천주차장 $2=$ 저수로측 모래질 시로,

* 1 차와 2차 시료는 채취시기가 다름

표 10. 탄천 고수부지 퇴적토의 배합비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

| 점토: 모래 혼합비 | pH | $\begin{gathered} \text { 유기물 } \\ \text { \% } \end{gathered}$ | $\begin{gathered} \mathrm{P}_{2} \mathrm{O}_{5} \\ \mathrm{mg} / \mathrm{kg} \end{gathered}$ | 치환성양이 온, $\mathrm{cmol} / \mathrm{kg}$ |  |  | $\begin{gathered} \text { CEC } \\ \mathrm{cmol} / \mathrm{kg} \end{gathered}$ | $\begin{gathered} \mathrm{EC} \\ \mathrm{dS} / \mathrm{cm} \end{gathered}$ | $\left\lvert\, \begin{gathered} \text { 엽기포화도 } \\ \% \end{gathered}\right.$ |
| :---: | :---: | :---: | :---: | :---: | :---: | :---: | :---: | :---: | :---: |
|  |  |  |  | K | Ca | Mg |  |  |  |
| 100:0 | 6.8 | 2.9 | 159 | 0.44 | 9.36 | 1.12 | 9.2 | 0.88 | 122 |
| 50:50 | 6.9 | 1.6 | 148 | 0.21 | 3.37 | 0.46 | 2.0 | 0.55 | 209 |
| 30:70 | 7.0 | 1.1 | 115 | 0.16 | 1.87 | 0.30 | 0.7 | 0.46 | 342 |

주) 이 표의 시료는 표 3 의 것과 서로 다른 것이며 점토 : 모래혼합비는 제방 쪽의 점토질 퇴적토와 저 수로 쪽의 모래가 주성분인 퇴적토의 혼합비임

표 11. 하상 및 하수도 퇴적토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

| 시료채취지점 |  | pH | 유기물 | $\begin{gathered} \mathrm{P}_{2} \mathrm{O}_{5} \\ \mathrm{mg} / \mathrm{kg} \end{gathered}$ | 치환성양이온 $\mathrm{cmol} / \mathrm{kg}$ |  |  | $\left\lvert\, \begin{gathered} \mathrm{CEC} \\ \mathrm{cmol} / \mathrm{kg} \end{gathered}\right.$ | $\begin{gathered} \mathrm{EC} \\ \mathrm{dS} / \mathrm{cm} \end{gathered}$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K |  |  | Ca | Mg |  |  |  |
| A | 몽촌펌프장 |  | 6.7 | 1.6 | 189 | 0.26 | 5.9 | 0.4 | 5.9 | 0.65 | 성내천 퇴적토 |
| B | 올림픽공원(청롱교상류) | 6.7 | 4.9 | 162 | 0.83 | 25.8 | 1.5 | 21.1 | 2.35 | 성내천 퇴적토 |
| C | 탄천펌프장 BOX | 6.9 | 2.9 | 175 | 0.26 | 6.2 | 0.7 | 6.5 | 1.10 | 하수도 퇴적토 |
| D | 탄천펌프장 하수관 | 6.7 | 2.8 | 79 | 0.27 | 9.2 | 0.2 | 8.7 | 1.70 | 하수도 퇴적토 |
| E | 신천펌프장 BOX | 7.2 | 1.7 | 153 | 0.24 | 26.2 | 0.8 | 16.8 | 0.90 | 하수도 퇴적토 |
| F | 신천펌프장 하수관 | 7.3 | 1.0 | 126 | 0.16 | 17.4 | 0.7 | 12.3 | 0.65 | 하수도 퇴적토 |
| G | 신천뻠프장 주변 | 6.7 | 4.3 | 244 | 0.67 | 7.9 | 0.6 | 11.6 | 1.30 | 빗물받이퇴적토 |
| H | 탄천펌프장 주변 | 6.8 | 4.5 | 59 | 0.70 | 25.1 | 0.5 | 18.7 | 1.90 | 빗물반이퇴적토 |

표 12. 퇴적토에서의 발아율
(단위: \%)

| 시료채취지점 |  | 팬 지 |  |  |  |  |  |  |  | 금 잔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일 | 5일 | 6일 | 7 일 | 8일 | 9 9일 | 10일 | 11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 (1) | 골드마리나 |  |  |  |  | 60 | 100 |  |  |  |  |  | 0 | 0 | 0 |
| (2) | 탄천주차장1 |  |  |  |  | 30 | 80 | 100 |  |  |  |  | 0 | 20 | 40 |
| (3) | 성내천하류 |  |  |  |  | 60 | 100 |  |  |  |  |  | 0 | 60 | 60 |
| (4) | 성내천중류 |  |  |  |  | 60 | 100 |  |  |  |  |  | 0 | 0 | 0 |
| (5) | 야 적 장 1 |  |  |  |  | 20 | 60 | 100 |  |  |  |  | 0 | 0 | 40 |
|  | 야 적 장 2 |  |  |  |  | 40 | 80 | 100 |  |  |  |  | 0 | 0 | 0 |
| 탄천혼합 (1:2) |  |  |  |  |  |  | 40 | 60 | 100 |  |  |  | 0 | 0 | 0 |
| 탄천혼합(1:3) |  |  |  |  |  | 80 | 80 | 80 | 80 |  |  |  |  |  |  |
| 밭 토 양 |  | 40 | 80 | 100 |  |  |  |  |  | 0 | 0 | 80 | 80 | 100 |  |
| 야산토양 |  | 60 | 80 | 100 |  |  |  |  |  | 0 | 0 | 40 | 100 |  |  |

주) 발아율은 발아기간동안의 발아된 port의 비율이며, 탄천혼합시료는 제방측 실트질과 저수로측의 모 래질 퇴적토 혼합 비율임

표 13. 생장실험결과 뿌리의 평균길이
(단위 : cm)


주) 밭토양 및 야산토양은 충남내학교 내의 밭과 야산에서 채취된 것임


사진 1. 퇴적토 옥상정원 활용 사례

에서 수요처로 직접 운송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침출수나 악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임시야적을 통 해 이를 저감시키도록 하고 야적장에 저장 후 적절한 단계를 거처 자원화 또는 처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적토의 자원화 절차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퇴적토의 자원화 과정은 오염도 측정, 퇴비 혼합, 출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 처야 할 것인데, 퇴적토를 자원화하고자 할 경


그림 3. 퇴적토의 자원화 체계

우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오 염도의 검사이다. 표토 또는 토양개량제 등으 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소한 토양환경보 전법상의 환경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한강 고수부지 퇴적토의 경우 중금속 및 난분해성 유기물 등 유해물질의 함량은 기준치 이내로 표토로 자원화 함에 있어서 유해성 문제는 없 었다.

한편 객토의 주 목적은 토성(입경) 개량이지 만, $Z$ 외에도 물리적 특성 개량, 화학적 특성 개량 및 보충, 그리고 생물학적 톡성 개량 둥 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량객토재 및 양호한 객토재의 유기물함량은 $2.5 \%$ 이하이며, 유호인산은 $31 \sim 48 \mathrm{mg} / \mathrm{kg}, \mathrm{CEC}$ 는 $10 \sim 12 \mathrm{cmol} / \mathrm{kg}$ 이다(표 8 참조). 따라서 퇴적토 의 이화학적인 성분은 토양개량제로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토성은 국내 밭 토양의 $1 / 4$ 을 차지하는 사양토로서 입경분포도 역시 객토재로서 적합한 토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품질향상을 위하여 무게 비로 충분한 양의 퇴비를 섞어 사용한다면 영양분 및 양이온치환능 등이 보완되어 식물성장에 도 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상 퇴적토와 하수도 퇴적토는 고수 부지 퇴적토와는 달리 오엽가능성이 높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써 관리되도록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재활용 단계에 있어서도 중간 처리과정이 요구된다. 실제로 하수도 퇴 적토의 경우 일부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 유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하수도 퇴적토를 식재지반용 표토로 자원화하기에는 적절치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 4. 서울시 수요예측 및 수요개발

퇴적토 자원화의 성공의 열쇠는 개발된 자원 의 활용 즉,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이다. 아무리 유.효한 이용일지라도 수요처가 없다면 무용지 묽이다. 따라서 수요 예촉 및 수요 개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재 퇴비로서 퇴적토의 자원화는 화학비료와의 경합, 수요의 계절변동, 안전성, 위생 문제 등(정남조, 1991) 예상되는

많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유해한 중금속류가 함유되어 있는지 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 1) 건물 조경용 소요량

구청장은 식재기준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식재 수량, 방법 둥 제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건축법 제 32 조, 영 제 27 조, 송파 구 건축조례 제18조 2항). 이에 따라 서울시의 의무조경면적은 표 14 에서 보듯이 건축연면적 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건축 법시행령 제 27 조, 조례 제 17 조, 제 18 조). 한편 퇴비소요량 산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가정이 필 요하며, 본 연구에서 취한 가정과 추정량은 표 15 에 종합하여 정라하였다. 추정에서 퇴비사용 의 기준으로서는 수자원개발공사의 「조경설계 기준」의 시비 기준(표 16 참조)을 원용하였으 며, 식재되는 수목 규격에 관한 일관된 정보가 없으므로, 이 중 가장 많이 식재될 것으로 추측 되는 8 cm 이하 근원직경의 수목을 통일적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추정에 따르면, 서울시와 송파구의 식재 지반용 토양(표토) 소요량은 각각 $188,790 \mathrm{~m}^{\prime}$ 와 $20,122 \mathrm{~m}^{\prime}$ 로 산출되었으며, 서울시와 송파구의 퇴비 소요량은 각각 $1,132,740 \mathrm{~kg}$ 과 $120,730 \mathrm{~kg}$ 로 산출되었다. 이 중 식재지반용 토양 소요량은 수목 생육에 필요한 최소토심 (평균 50 cm )을 조경면적 전체에 걸쳐 모두 표토에 해당하는 퇴적토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 다. 그러나, 실제의 식재공사 관행에서는 이와 달리 기존의 토양을 새로 반입된 토양으로 교 체하지 않고, 기존 토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식재용 구덩이에 한해서 퇴비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관행 하에서는 쓰레기 매립지 녹화나, 인공식재지반 조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식재지반용 토양 의 수요가 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퇴비 소 요량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소기준을 적용 하여 가장 비관적으로 추산된 물량으로서, 실 제로는 추정치 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판단 된다.

표 14. 서울시 의무조경 면적

| 구분 | 조경면적 기준 | 식수 동 식재 기준 |
| :---: | :---: | :---: |
| 건축연면적 <br> 2천 $\mathrm{m}^{2}$ 이상 | 대지면적의 $15 \%$ 이상 조경 | - 교목: 0.2 본/m ${ }^{2}$ <br> 이상, 수량의 |
| 건축연면적 <br> 1천 $\mathrm{m}^{2}$ 이상 | 대지면적의 <br> $10 \%$ 이상 조경 | $\begin{aligned} & 50 \% \text { 이상은 } \\ & \text { 수고 } 2 \mathrm{~m} \text { 이상의 } \\ & \text { 교목 } \end{aligned}$ |
| 건축연면적 <br> 1천 $\mathrm{m}^{\text { 미만 }}$ | 대지면적의 $5 \%$ 이상 조경 | - 관목 : 1 본 $/ \mathrm{m}^{2}$ 이상 |

표 15. 서울시 건축 조경용 토양 및 퇴비 소요량 예측

| 구분 | 서울시 | 송파구 | 비고 |
| :---: | :---: | :---: | :---: |
| '95건축허가 <br> 헌황 | $\begin{array}{\|r} 17,617 \text { 동 } \\ 127,587 \text { 세 대 } \\ \text { 연 } 18,879 \text { 천 } \mathrm{m}^{2} \end{array}$ | $\begin{array}{r} 818 \text { 동 } \\ 6,313 \text { 세대 } \\ \text { 연 } 2,012 \text { 전 } \mathrm{m}^{2} \end{array}$ |  |
| 대지면적 ( $\mathrm{m}^{\mathrm{\prime}}$ ) | 7,551,622 | 804,859 | 뵹적률 $250 \%$ |
| $\begin{aligned} & \text { 최소조경 } \\ & \text { 면적 }\left(m^{2}\right) \end{aligned}$ | 377,581 | 40,243 | $5 \%$ 기준 적용 |
| 최소식수 <br> (본) | $\begin{aligned} & \text { 교목: } \quad 37,758 \\ & \text { 관목: } 188,79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교목: } 4,024 \\ & \text { 관목 : } 20,122 \end{aligned}$ | 교목 $50 \%$, <br> 관목 $50 \%$ <br> 기준 적용 |
| 토양소요량 (mi) | 188,790 | 20,122 | 최소 50 cm 기준 적용 |
| 퇴비소요량 (kg) | 1,132,740 | 120,730 | $\begin{aligned} & \text { 주당 } 5 \mathrm{~kg} \\ & \text { 기준 적 } \stackrel{ }{\circ} \end{aligned}$ |

표 16. 유기질 비료 시비 기준

| 근원 <br> 직경 | 유기질 <br> 비료 $(\mathrm{kg})$ | 근원 <br> 직 경 | 유기질 <br> 비료 $(\mathrm{kg})$ | 근원 <br> 직경 | 유기질 <br> 비료 $(\mathrm{kg})$ |
| :---: | :---: | :---: | :---: | :---: | :---: |
| 5 이하 | 5 | 18 | 15 | 35 | 35 |
| 6 | 5 | 20 | 20 | 40 | 40 |
| 8 | 5 | 22 | 20 | 관목류 <br> 군식 | $10 \mathrm{~kg} / \mathrm{m}$ |
| 10 | 10 | 25 | 25 | 관목류 <br> 단식 | 5 |
| 12 | 10 | 28 | 25 |  |  |
| 15 | 15 | 30 | 30 |  |  |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1996, 『조경설계기준s, 한국수자원공사, p.293.)

## 2) 나무심기용 소요량 추정

서울시에서는 매년 공공 녹화사업의 일환으 로 나무심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1995년도와 1996년도의 실적과, 이를 근거로 한 식재지반 용 소요량 및 퇴비 소요량을 추정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여기서 표토 소요량 추정방식은 앞 의 전축물 조경용 표토 소요량 산출과 동일하 게 식재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퇴비 소요 량 추정도 건축물 조경용 퇴비 소요량 산출과 동일하게 식재 본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 과를 살펴보면 '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 전체의 나무심기용 표토 소요량은 $594,200 \mathrm{~m}^{3}$, 퇴 비 소요량은 1,792 ton으로, 건축물 조경용의 표 토 소요량 $188,790 \mathrm{~m}^{3}$ 와 퇴비 소요량 $1,133 \mathrm{ton}$ 에 비해 표토 소요량은 약 3 배, 퇴비 소요량은 약 1.5 배로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무심기에 필요한 소요량 추정에 있어서도 표토 소요량은 조경면적 전체에 걸쳐 평균 50 cm 두께의 토양을 모두 표토로 충당한다는 가정 하에 추산된 것으로서 송파구에서 지난 5년간 객토 실적이 전무했음(표 18 참조)을 감안할 때 현실과 큰 괴리가 있는 추정치이다. 이에 비해 추정된 퇴비 소요량은 실제 송파구에서 지난 5 년간 실행된 실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둣이 상 당히 현실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표 17. 서울시 식수 실적 및 퇴비 수요추정

| 구 분 | '95 |  |  |  | '96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적 <br> (ha) | 식재 <br> 본수 <br> (천) | $\begin{aligned} & \text { 폰토 } \\ & \text { 소요 }^{\prime \prime} \\ & \left(\mathrm{m}^{\prime}\right) \end{aligned}$ | $\begin{array}{\|c\|} \hline \text { 퇴비 } \\ \text { 소 } \mathrm{R}^{2 n} \\ \text { (ton) } \end{array}$ | 면 적 <br> (ha) | 식 재 <br> 본수 <br> (친) | $\begin{gathered} \text { 표토 } \\ \text { 소요 } \\ \left(\mathrm{m}^{3}\right)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퇴비 } \\ & \text { 소요 }{ }^{2} \\ & \text { (ton) } \end{aligned}$ |
| 계 | 119 | 358 | 594,200 | 1,792 | 187 | 342 | 933,400 | 1,714 |
| 장기수 | 31 | 61 | 153,100 | 307 | 39 | 40 | 197,350 | 198 |
| 유실수 | 10 | 13 | 50,050 | 66 | 14 | 56 | 68,100 | 282 |
| 대묘 | 2 | 6 | 12,450 | 30 | 3 | 3 | 15,000 | 15 |
| $\begin{aligned} & \text { 환경 } \\ & \text { 조림 } \end{aligned}$ | 65 | 250 | 325,150 | 1,254 | 113 | 220 | 566,250 | 1,098 |
| $\begin{aligned} & \text { 뺑아 } \\ & \text { 갱신 } \end{aligned}$ | - | - | - | - | 0 | 0 | 1,500 | 2 |
| $\begin{aligned} & \text { 가로수 } \\ & \text { 식재 } \\ & \hline \end{aligned}$ | 2 | 2 | 10,050 | 10 | 5 | 7 | 25,850 | 34 |
| $\begin{gathered} \text { 무궁화 } \\ \text { 식재 } \end{gathered}$ | 9 | 25 | 43,400 | 125 | 12 | 17 | 59,350 | 85 |

[^0]표 18．송파구청 공공 녹화사업 및 퇴비사용량 （＇92－96）

| 구 분 | 내 역 |
| :--- | :---: |
| 최근 5년간（＇92～＇96） <br> 식목 및 화훼류 식재 <br> 실적 | －목본류 $: 7,000 \sim 8,000$ <br> 본／년 <br> 초본류（화훼류 포함）： <br> 50 만 본／년 |
| 최근 5년간 <br> （92～＇96）퇴비사용 <br> 실적 | 연간 $40,000 \mathrm{~kg} /$ 년 <br> （약 1,000 만원） |
| 본당 퇴비 사용량 | $40,000 / 7,500=5.3 \mathrm{~kg}$ |
| 최근 5년간（＇92～＇96） <br> 식재지반 객토 실적 | 없음 |

＊일반적으로 초본류 식재시에는 퇴비를 시비 하지 않고 있음
（자료 ：송파구 내부 자료）

## 3）총 퇴비 소요량 추정

이상의 추정을 종합해보면，서울시 전체에서 건축물 조경용과 나무심기에 필요한 식재용 토 양 즉，표토 소요량은 $782,990 \mathrm{~m}^{\prime}$ ，퇴비 소요량 은 2,925 ton으로 집계된다．이 중 표토 소요량 은 기존의 식재지 토양이 매우 열악하다는 전 제하에 조경면적 전체에 걸처 식물생육 최소 토심 50 cm 전량을 새로운 표토로 조성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것으로서 현실과 큰 괴리가 있는 반면에 퇴비 소요량은 매우 현실적인 추 정치인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법규와 같은 통 일적인 식재지반 조성 기준이 없고，토양검사 에 의한 식재지반의 성능 검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시공성 측면에서도 퇴비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그러나 토양 검사가 의무화된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표토 소요량으로 추정된 상 기 수치는 현실적인 추정량으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훼 손지 복원 및 척박지 개량 차원의 수요량이 매 우 중요할 것이다．

## 4）수요 개발

－공공사업에 퇴적토 사용의무화
퇴적토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인 사용의무화보다 공공사업의 식재지반 조 성 설계지침을 법제화하고，그 안에 사전 토양 검사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이 법제화된 식재지반설계 지침에 서 토량개량의 내용으로 객토와 퇴비사용을 구 분하여 설계토록 하면，현재의 불합리한 식재 관행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식재지반 개선과 표토 보전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도 현재 토목공사 와 건축공사 단계에서 표토의 훼손이 관행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호한 식재지반용 토양인 퇴적토 활용의 판로가 자연스럽게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건축허가 시 조경식재에 사용 권유
건축허가시에도 공공토목사업에서와 마찬가 지로 직접적인 퇴적토 사용 의무화는 보다는 식재지반 개선 차원에서 건축허가 심사서류에 토양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토양개량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이 는 이미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되고 있는 제도이다（三橋一也，相川貞晴，1981；中村貞一，1977；DIN，1973，1976，1979；Ernst et al，1974）．건축허가시 식재지반 조성공사와 관 련하여 토양검사의 의무화는 간접적으로 퇴적 토 활용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근본적으 로 표토를 보전하고，식재지반의 질을 개선함 으로써 현재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생물부 양능을 증대시켜，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이다．이 제도는 토양 개량제로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퇴적토 활용 을 활성화하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다．한편， 토양검사 의무화의 문제점으로 토지개발자의 토양검사 비용부담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나，이는 외국의 선례를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왜냐하면，토양검사가 사회 적으로 의무화되면，자연적으로 토양검사 기술 인력의 확충，토양검사 기관의 자생을 통해 외 국에서처럼 소액（40～5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소정의 토양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IV. 결 론

홍수시에는 상당한 양의 퇴적토가 한강 본류 와 주요 지천의 고수부지, 저수로, 하천시설 등 에 쌓이고 있는데, 이는 상류 유역의 비옥한 토 양의 침식물로서 일반 토양에 비해 영양분이 풍부하고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톡성이 있어, 일 부 미흡한 특성을 보완할 경우 자원성이 높은 식재지반용 토양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 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폐기물로 간주 되어 수거 후 매립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퇴적 토 중 주로 홍수시 하천 고수부지에 쌓이는 퇴 적토의 자원성을 확인하고, 자원화 방안을 모 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퇴적토의 발생 현황 및 특성 을 파악하고, 식재용 토양으로서의 활용가능성 을 평가하였으며, 식재토양의 수요를 추정하였 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퇴적토 발생량은 강우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데, 주요 관심 대상인 한강 고수부지에 퇴 적되는 토사는 홍수가 심했던 1995년의 경우 부피로 $257,000 \mathrm{~m}$ 가 쌓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40 \%$ 만이 수거되었다. 한편 송파구 관내에서 는 ' 97 년도에 탄천 고수부지에서 $8,000 \mathrm{~m}$ '. 성내 천 준설에서 $20,441 \mathrm{~m}$, 하수도 퇴적토에서 $6,907 \mathrm{~m}^{\prime}$ 가 발생하였다. 수거된 퇴적토 중 한강 및 탄천 고수부지 퇴적토는 전량 복토재로 활 용되거나 한강 하류 고수부지에 야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성내천 하상 퇴적토는 일부를 제외 한 대부분이 폐기물로 유료 매립되었으며, 하 수도 퇴적토의 경우 전량 유료로 매립되었다.

한강 고수부지 퇴적토, 싱내천 하상 퇴적토, 하수도 퇴적토에 대해서 식재토양 가치, 오염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한강 고수부지 퇴적토와 성내천 퇴적토의 특성은 pH 가 $5.1 \sim 5.3$ 으로 국내 경작지 토양 범위 $5.5 \sim$ 6.9보다 다소 낮은 겻을 제외하면, 토성(사양토 혹은 양토), 유기물 함량(2.5~5.5\%), 유효인산 $(22 \sim 98 \mathrm{mg} / \mathrm{kg})$, 치환성양이온(K:0.5~1.1, Ca : $0.9 \sim 9.6, \quad \mathrm{Mg}: 0.1 \sim 0.7, \quad \mathrm{Na}: 0.7 \sim 3.1 \mathrm{cmol} / \mathrm{kg})$,

양이온치환용량 $(3.1 \sim 24.3 \mathrm{cmol} / \mathrm{kg})$ 등의 항목에 서 모두 우량 객토제로서 손색이 없었다. 이와 병행하여 실시된 팬지 및 금잔화의 발아 및 생 장실험 결과에 의해서도 지극히 우량한 밭 토 양과 산 토양에 비해서 발아율과 생장률이 약 간 떨어지지만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 고수부지 퇴적토 뿐만 아니라 하상 퇴 적토 및 하수도 퇴적토에 대해서 토양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된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측정결과에 의하면,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내로서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토양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된 토 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한 측정 결과에 의하면, 한강 고수부지 퇴적토 및 하상 퇴적토는 유류 를 제외한 전 항목이 정상치였으며, 다만 유류 가 대부분의 시료에서 미량 검출됨으로써 농경 지 우려기준(불검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미량의 유류가 식물의 발아 및 생장 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선행 연구를 감안할 때 문제가 없 다고 판단되었다.

이 가운데 한강 고수부지 퇴적토는 오염가능 성이 거의 없으므로 육안선별을 거처 현장에서 최대한 자원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한편 하상 퇴적토 및 하수도 퇴적토는 오 염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원화할 경우에는 사전 에 반드시 토양오염 검사와 적정처리를 거친 후 분리수거, 분리저장을 하고, 야적장에 장기 간 야적, 뒤집기,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퇴적토를 식재지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금속 동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기준치 이내이 어야 하며, 영양염류 함량, 양이온치환능, 유기 물 함량이 식물 생육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 는데, 한강 고수부지 퇴적토의 대부분과 하상 퇴적토 일부가 토양개량제 혹은 식재지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적토 재활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 해 실시한 용도별 수요예측 결과에 의하면, 식 재지반용 토양의 수요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거 의 없으나 자원화 우선 순위가 높은 식재지반

토양 수요개발을 위해 식재지반 설계시 토양검 사 및 토양보완 의무화，공공 녹화사업에서 식 재지반으로서 퇴적토 시범 활용 등의 사업추진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참 고 문 헌

권혁재．1991．自然地理學．빕문사．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1997．한강수로조사 용역보고서．
김규식．1996．중금속 토양오염 복원을 위한 식 물기술이용．한국토양환경학회 부산．경 남지부 결성 및 토양환경세미나 자료집． 임선욱 ．이춘령．1972．土壤肥料．서울대출판부． pp．75－77．
임선욱，1997，＂식물영양학•비료학，
정남조．1991．도시 폐기물－현대 쓰레기 문제－． 동화기술．
조성진 외．1985．신고 토양학．향문사．pp．303－ 309.

한국수자원공사．1996．조경설계기준．한국수자 원공사．
三橋一也，相川貞晴．1981．造園技術必携2．東京：鹿島出版會．p． 65.
中村貞一．1977．綠地造成園の工法．東京：鹿島出版會．
Department of The Army Office of the Chief of Engineers，Corps of Engineers．Code No． CEGS－02050，02201，02210，02232，02233， 0248502490.

Department of The Navy．1979．Civil Engineering－ Soil Conservation．D．M．
DIN．1973．Bodenarbeiten，DIN 18915.
DIN．1976．Landschaftsbauarbeiten，DIN 18320.
DIN．1979．Erdarbeiten，DIN 18300.
Ernst et al．1974．Bundesbaugesetz（Kommental）． Berlin ：C．H．Beck．§ 39，§ 156.
LaGrega，Michael D．，P．L．Buckingham J．C． Evans．1994．Hazardous Waste Management．


[^0]:    1) 년적당 표토 소요량 : $0.5 \mathrm{~m} / \mathrm{m}^{2}$
    2) 수목 1 주당 퇴비 사용량: $5 \mathrm{~kg} /$ 본
